

수협은행 계약준칙 제90조

제9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이라 하며,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등의 자격(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당행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행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개정 2019.09.23., 2021. 6. 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개정 2019.09.23>
 4. 계약을 이행하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준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개정 2021. 6. 8.>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011.05.09>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제한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 ④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준칙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당행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 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2021. 6. 8.>
- ⑨ 당행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임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부터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과 제3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제36조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2021. 6. 8.>